資料論文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張亨壽 · 朴映坤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資料論文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張亨壽 · 朴映坤

1999. 12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國文要約

20세기말 국제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대부분의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이나 몇몇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간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빈곤국들의 경우 심각한 외채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외채경감이 없이는 빈곤국들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파리클럽, 세계은행, IMF 등이 외채경감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과 IMF의 HIPC Initiative를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HIPC Initiative의 확대개편안인 Köln Initiative를 중심으로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세계은행이 지정하고 있는 41개 중채무국들중 9개국에 대해 약 1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어 Köln Initiative를 통해 중채무국들에 대해 외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öln Initiative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채무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앙골라, 케냐 등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적인 경제상황으로 Köln Initiative의 수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Köln Initiative 실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부담은 여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Köln Initiativ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우리도 이제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目 次

Ⅰ. 서언 9

Ⅱ. Köln Debt Initiative의 주요 내용 12
1. 重채무국(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12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13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13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14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15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 15
7. 수혜적격국 확대 17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커니즘 21
1. 운영 21
2. 회원국 21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22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23
5. 채무재조정 조건 24

Ⅳ. 한국의 대응방안 30
1. Kö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30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 36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문제 39
4. 파리클럽 참가문제 40

<부록 1>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 41
가. HIPC Initiative의 목적 41
나. HIPC Initiative 수혜조건 41

다. HIPC Initiative 지원절차 42
라. HIPC Initiative 지원실적 46

<부록 2> 채무재조정(Debt Restructuring)의 유형 및 대상 50

參考文獻 53

Executive Summary 55

表 目 次

<표 Ⅱ-1> HIPC Initiative와 Köln Initiative의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 비교 14
<표 Ⅱ-2> HIPC Initiative와 Köln Debt Initiative하의 채권자별 분담비용 17
<표 Ⅱ-3> HIPC Initiative의 외채상환능력지표의 변화에 따른 수혜적격국 18
<표 Ⅱ-4> HIPC Initiative의 외채상환능력지표의 변화에 따른 수혜적격국 19
<표 Ⅱ-5> HIPC의 외채상환능력 지표 20
<표 Ⅲ-1> 파리클럽의 외채경감 조건 변화 추이 29
<표 Ⅳ-1> HIPC에 대한 한국의 지원잔액(1999년 6월말 기준) 31
<표 Ⅳ-2> 한국의 HIPC국에 대한 지원현황 32
<표 Ⅳ-3> 한국이 자금지원하고 있는 중채무국들의 외채상환능력지표 (1996년 기준) 33
<표 Ⅳ-4> 한국이 자금지원하고 있는 중채무국들의 채권자별 외채구성과 파리클럽으로부터의 외채경감 현황 34
<표 Ⅳ-5> HIPC국가에 대한 EDCF 지원현황(1999. 6. 30 현재) 35
<표 Ⅳ-6> HIPC국가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현황(전대자금 포함) (1999. 6. 30 현재) 36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언

1980년대 초 전세계적인 외채위기가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대다수의 빈곤국들은 심각한 외채부담을 안고 있다. 빈곤국들이 심각한 외채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채관리 미숙이나 구조개혁 지연 등 내부적인 요인에도 기인하겠지만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러시아, 중남미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외채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제사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경제발전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왔지만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이는데에는 실패했다. 결국 빈곤국들의 외채를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지 않으면 외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베이커플랜 및 브래디플랜이나 IMF의 ESAF[1] 등 외채경감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파리클럽(Paris Club) 채권국들, 非파리클럽 채권국들,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빈곤국들의 외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왔으며, 그 중에서 세계은행과 IMF의 重債務國들(HIPCs: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을 위한 외채문제해결전략(Debt Initiative)을 중심으로 빈곤국들의 외채를 경감시켜 왔다.

하지만 HIPC Initiative로부터 외채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HIPC Initiative에서 제시하는 적정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경제개혁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빈곤국들은

1) 확대구조조정제도(ESAF: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는 최빈개도국들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 및 외채문제를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당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조정금융제도(SAF: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를 확대하여 1987년 12월에 설치된 것으로 장기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양허적인 조건의 IMF 신용제도임. ESAF의 재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운용되며 수혜대상국은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1996년 기준 1인당 GNP가 925달러 이하인 최빈회원국임.

동 프로그램으로부터 외채경감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방선진 7개국(G7)과 개발도상국들은 HIPC Initiative의 수혜조건을 완화할 것을 IMF와 세계은행에 촉구하게 되었고, 1999년 6월 쾰른 G8 정상회담에서는 G7 재무장관들이 빈곤국의 외채문제해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다수의 빈곤국들의 외채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은행과 IMF는 G7 재무장관들의 HIPC Initiative 확대개편안인 Köln Initiative을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승인하였고 향후 빈곤국들에 대한 외채경감은 HIPC Initiative가 아닌 Köln Initiative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999년 6월 독일 쾰른 G8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이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외교통상부의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수행되었음을 밝혀둔다. 저자들은 좋은 논평을 해주신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권해룡 서기관, 금융연구원 이장영 박사, 한국수출입은행 유길상 박사께 감사를 드린다.

◀ 베이커 플랜과 브래디 플랜 ▶

- 1982년 8월 멕시코의 지불유예(moratorium)선언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지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는 남미는 물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동구 등지로 번져 나갔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사회는 1982~85년 동안에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단기금융지원과 함께 채무국의 개혁을 동시에 요구하였음.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황지속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 및 국제고금리의 지속으로 이들 채무국들로의 국제민간자금의 순유입이 증가되기는커녕 외채원리금상환을 고려하면 순자본유출 현상이 지속되었음.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만으로는 개도국의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자 당시 미 재무장관 베이커의 1985년 10월 서울선언으로 베이커 플랜이 탄생되었으며, 이 플랜이 1986~88년에 걸쳐 개도국의 외채상환 지원전략이 됨.
- 외채위기는 단기적인 국제수지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경제의 성장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베이커 플랜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가 새로운 자금지원과 함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도국의 개혁을 촉구해야 하며, 민간채권금융기관도 외채위기국들에 대한 채무재조정(rescheduling)과 신규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그러나 베이커 플랜은 큰 성과가 없었음. 그 이유는 민간채권금융기관들간의 무임승차(free-rider)문제 때문에 신규자금공여가 부진하였고 국제금융기관들의 자금공여도 채무국들이 IMF 구조조정 이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목표치보다 부진하였음. 이에 따라 1989년 3월 브래디 미 재무장관은 새로운 외채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브래디 플랜은 베이커 플랜의 기본정책기조하에 외채탕감(debt and debt service reduction)의 요소를 더한 것으로서 민간채권은행 외에도 IMF, 세계은행, 일본이 채무국들에게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적인 외채탕감자금을 지원하였음.

Ⅱ. Köln Initiative의 주요 내용[2)]

1999년 6월 18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G8정상회담에서 G7 재무장관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인 HIPC Debt Initiative[3)]에 대해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하고(faster), 심도있고(deeper), 확대된(broader) 외채문제 해결프로그램인 "Köln Debt Initiative"을 제안하였으며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동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다. Köln Debt Initiative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채경감 확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重債務國(HIPC)에 대한 외채경감 확대

G7 재무장관들의 Köln Initiative에 대한 보고서[4)]에서는 Köln Initiative가 실행되면 HIPC Initiative를 통해 외채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중채무국들의 외채(debt stock)가 전통적인 외채경감방식(traditional debt relief)을 통해 외채를 경감해준[5)] 이후 남는 약 1,300억 달러(순현재가치 기준으로는 710억 달러)에 대해 추가적으로 500억달러(순현재가치 기준으로는 270억 달러)가 탕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6)]

---

2) Köln Initiative에 대한 주요내용은 G7 재무장관들의 보고서, G7 정상 공동성명, G8 정상 공동성명에서 발췌함.

3) <부록 1>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 참조.

4) 1999년 6월 18일 쾰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G7 재무장관들이 Köln Initiative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Report of G7 Finance Ministers on the Köln Debt Initiative to the Köln Economic Summit)임.

5) Wall Street Journal(6/21)에서는 traditional debt relief를 통해 약 730억 달러가 삭감될 것이라고 보도함.

6) Wall Street Journal(6/18)에 따르면 1997년말 기준 2007억달러에 달하는 41개 중채무국(HIPC)의 공공채무중에서 traditional debt relief를 통해 730억달러를 경감시키고, 나머지 1,270억달러에 대해서는 G7이 콩고, 수단, 라이베리아 등 3개국을 제외한 38개국에 대해 70%에 해당하는 890억달러를 추가 경감키로 합의했으며, HIPC의 890억달러 경감액중 G7은 700억달러를 분담하고 나머지 190억달러는 여타국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파리클럽의 외채경감폭 확대

기존의 HIPC Initiative에서 파리클럽 채권국 및 양자간채권국들은 상업채무(commercial debt)에 대해 최대 80%까지 경감시켜주는 반면 (예외적으로 모잠비크에 대해서는 80%이상이었음) Köln Initiative에서는 최대 90%까지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빈국(the very poorest countries)의 경우에는 90% 이상까지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HIPC Initiative로부터 외채경감을 받지 못하는 여타 빈곤국들에 대해서는 파리클럽이 나폴리 조건(Naples terms)에 따라 일률적으로 외채의 67%를 경감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G7 재무장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3.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한 탕감 촉구

G7 재무장관들은 모든 채권국이 빈곤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7] 채무를 완전 탕감해주도록 촉구하였으며, 향후 지원되는 ODA에 대해서도 무상공여(grant)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7) ODA는 선진국의 정부나 다자간 기관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고금리와 단기간인 민간원조보다 낮은 이자율과 장기간의 만기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공여(grant), 차관, 기술지원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1973년 1월 1일 이후 조인된 모든 개발원조에 대해 grant element가 25% 이상인 개발원조만을 ODA로 분류하고 있음.

4.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의 하향 조정

HIPC Initiative로부터 외채를 경감 받기 위한 중채무국 선정기준인 외채상환능력평가지표를 조정하여 더 많은 빈곤국들이 외채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출 대비 외채의 순현재가치(NPV)[8] 비율을 기존 HIPC Initiative의 200~250%이하에서 150%이하로 하향 조정하였고, GDP대비 수출의 비율을 기존의 4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HIPC Initiative로부터의 외채경감지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채무국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막기 위한 외채상환능력지표의 하부기준(sub-criteria)인 GDP대비 재정수입의 비율을 기존의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하고 재정수입대비 외채의 순현재가치 비율도 기존의 280%이하에서 250%이하로 강화시켰다.

<표 Ⅱ-1> HIPC Initiative와 Köln Initiative의 외채상환능력 평가기준 비교

	HIPC Initiative	Köln Initiative
외채상환능력지표	외채의 순현재가치/수출 < 200~250%	외채의 순현재가치/수출 < 150%
	외채의 순현재가치/재정수입 < 280%	외채의 순현재가치/재정수입 < 250%
하부기준	수출/GDP > 40%	수출/GDP > 30%
	재정수입/GDP > 20%	재정수입/GDP > 15%

8) 외채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는 미래 상환시점의 모든 이자율과 외채원리금을 현재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외채총액임.

5. HIPC Initiative 기간단축

기존의 HIPC Initiative하에서는 세계은행과 IMF가 제시하는 3년간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후 심의시점(decision point)에서 외채경감 시행여부 결정을 거쳐 추가적으로 3년간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야 완결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Köln Initiative에서는 해당국이 구조조정을 통해 높은 경제실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2단계(second stage)의 구조조정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시켜 완결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floating completion point).

또한 HIPC Initiative에서는 외채경감이 완결시점(completion point)에서만 가능하였으나 Köln Initiative에서는 빈곤국들의 외채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한 'interim relief' 조항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외채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외채경감을 완결시점 이후인 6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의시점이 지난 3년 뒤인 심의시점과 완결시점 사이에 'interim relief'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파리클럽에서는 이미 양자간채무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구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G7 재무장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

6. 재원조달 및 운영비용[9)]

G7 재무장관은 Köln Initiative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IMF가 1천만 온스의 보유금을 매각하고 또한 각국 정부가 HIPC 신탁기금(Trust Fund)에 대해 더 많은 자금을 출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IMF도 이에 대해

9) 운영비용 추정치는 World Bank. *Perspective on the Current Framework and Options for Change*. May 12. 1999; World Bank. *Prepared by the Staff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September 22, 1999를 참조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시장에서 금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금생산국들의 금가하락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IMF 보유금의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고려중이다.

세계은행은 기존의 HIPC Initiative하에서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수단을 제외한 38개 중채무국을 대상으로 외채경감을 실행할 경우 1999년 9월 현재 HIPC Initiative의 추정 총운영비용은 순현재가치기준으로 1998년 추정치인 97억 달러에서 29% 상승한 125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채권자별 HIPC 운영비용분담에 대한 추정치에 따르면 125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HIPC Initiative의 총 운영비용중 파리클럽을 비롯한 공공채권자, 상업채권자들이 63억 달러를 분담하고 세계은행, IMF 등 다자간채권자들이 62억 달러를 분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Ⅱ-2 참조).

하지만 외채상환능력지표을 보다 완화한 Köln Initiative하에서의 운영비용은 HIPC Initiative의 125억달러보다 149억달러가 더 많은 274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Ⅱ-2 참조). 또한 274억 달러중 파리클럽을 비롯한 양자간 및 상업채권자들은 142억 달러를 분담하고 다자간 채권자들은 133억달러를 분담하게 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표 Ⅱ-2> HIPC Initiative와 Köln Debt Initiative하의 채권자별 분담비용

	HIPC Initiative	Köln Initiative
외채상환능력지표(%)		
외채의 순현재가치/수출	200	150
외채의 순현재가치/재정수입	280	250
수출/GDP, 재정수입/GDP	40/20	30/15
총비용(십억 달러)[1]	12.5	27.4
양자간 및 상업적 채권자	6.3	14.2
파리클럽	5.2	11.5
여타 공적 양자간 채권자	1.0	1.7
상업적 채권자	0.1	0.9
다자간 채권자	6.2	13.3
세계은행	2.4	5.1
IMF	1.2	2.3
AfDB/AfDF	1.0	2.0
IDB	0.5	1.0
기타	1.3	2.9

주: 1) 인권과 민주화에 문제가 있는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수단은 제외.

자료: World Bank. 1999. 5. *Perspective on the Current Framework and Options for Change - Further Supplement on Costing, Tables 5. HIPC Initiative-Estimates of Potential Costs by Creditor Current Framework and Selected Alternative Scenarios with Retroactivity;* World Bank. 1999. 7. *Modifications to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ues (HIPC) Initiative* 에서 재구성한 것임.

7. 수혜적격국 확대

기존의 HIPC Initiative하에서는 41개 중채무국중[10] 29개국만이 동 프

10) 41개 중채무국중 앙골라, 베트남, 적도 기니, 케냐, 예멘 등 5개국은 건전한 거시경제지표와 안정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1999년 7월 현재 Köln Initiative 수혜적격국에서 제외됨(표 Ⅱ-5 참조).

로그램으로부터 외채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외채상환능력지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Köln Initiative에서는 외채상환능력지표의 완화로 베닌, 세네갈, 가나, 혼두라스, 라오스, 토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도 외채경감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총 36개국이 Köln Initiative 수혜적격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표 Ⅱ-3, Ⅱ-4, Ⅱ-5 참조). 하지만 Köln Initiative에서 인권과 민주화에 문제가 있는 라이베리아, 수단, 소말리아에 대해서는 외채경감을 금하고 있으므로 실제 Köln Initiative 수혜적격국은 33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Ⅱ-3> HIPC Initiative의 외채상환능력지표의 변화에 따른 수혜적격국

	외채상환능력지표(%)			수혜적격국[1]	
	외채의 순현재가치/수출	외채의 순현재가치/재정수입	하부기준 수출/GDP, 재정수입/GDP	A[2]	B[3]
HIPC Initiative	200~250	280	40/20	29	3
Köln Initiative	150	250	30/15	36	6

주: 1) 인권과 민주화에 문제가 있는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수단은 제외.
2) 세계은행과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중채무국중 외채상환능력지표내(외채의 순현재가치/수출, 외채의 순현재가치/재정수입)의 외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3) HIPC Initiative 수혜적격국인 A국중에서 하부기준인 재정수입관련 기준(fiscal criterion)에도 적합한 국가.

자료: World Bank. *Perspective on the Current Framework and Options for Change - Further Supplement on Costing, Tables 2. Estimated Costings of Illustrative Changes in HIPC Initiative Framework*, 1999. 5; World Bank. 1999. 7. *Modifications to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ues (HIPC) Initiative;* World Bank. *HIPC Initiative Progress Through September 1999* (http://www.worldbank.org/hipc/progress-to-date/May99v3/may99v3.htm)에서 재구성한 것임.

<표 Ⅱ-4> HIPC Initiative의 외채상환능력지표의 변화에 따른 수혜적격국

HIPC Initiative(29개국)	Köln Initiative(36개국)
1997년 및 1998년에 심의시점 도달국	외채경감 평가 대상국
볼리비아 버키나 파소 코트디브와르 가이아나 말리 모잠비크 우간다	볼리비아 버키나 파소 코트디브와르 가이아나 말리 모잠비크 우간다 **베닌** **세네갈**
1999년 및 2000년에 심의시점 도달 예상국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에디오피아 기니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니카라과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잠비아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에디오피아 기니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니카라과 니제르 르완다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잠비아 **가나** **혼두라스** **라오스** **토고**
2001년 이후 심의시점 도달 예상국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상투메 프린시페 소말리아 수단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상투메 프린시페 소말리아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자료: World Bank. 1999. 7. *Modifications to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ues (HIPC) Initiative.*

<표 Ⅱ-5> HIPC의 외채상환능력 지표

(단위 : %)

HIPCs[1]	기준 심의시점	외채의 순현재가치 /수출	외채의 순현재가치 /재정수입	수출/GDP	재정수입 /GDP
앙골라	2003	99	184	73	33
베닌	1997	173	260	26	14
볼리비아	1997	239	180	19	23
버키나 파소	1997	247	219	8	12
부룬디	2002	658	377	8	13
카메룬	2000	206	329	25	15
중앙아프리카공	2001	233	357	17	10
차드	1999	188	396	18	8
콩고민주공화국	2003	336	577	26	13
콩고공화국	2000	243	656	67	26
코트디브와르	1998	184	356	44	21
적도 기네	2002	33	126	95	19
에디오피아	1999	236	185	16	19
가나	1999	175	243	27	18
기니	1999	259	493	20	11
기니비사우	2000	926	794	32	33
가이아나	1997	158	412	103	33
온두라스	1999	147	323	47	18
케냐	2000	115	112	28	28
라오스	1999	179	441	34	12
마다가스카르	2000	272	488	22	11
말라위	1999	238	443	26	16
말리	1998	220	315	22	15
모리타니아	1999	253	414	42	28
모잠비크	1998	555	665	26	20
미얀마	2002	214	711	8	2
니카라과	1999	422	661	43	25
니제르	1999	247	430	16	8
르완다	2000	513	258	6	10
상투메프린시페	2002	739	1165	34	20
세네갈	1998	131	273	46	23
시에라리온	2000	361	1062	19	7
탄자니아	1999	254	282	15	13
토고	1999	151	298	34	16
베트남	1997	294	285	12	10
우간다	1999	57	122	48	21
예멘	1999	149	196	40	35
잠비아	1999	428	798	32	19

주: 1) 41개 중채무국중 인권과 민주화에 문제가 있는 라이베리아, 수단, 소말리아는 제외.
자료: World Bank. 1999. 7. *Modifications to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ues (HIPC) Initiative*에서 재구성.

Ⅲ.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메카니즘

1. 운영

파리클럽은 1956년 아르헨티나의 공공채무를 재조정하기 위해 프랑스 재무성(Treasury)이 주관하여 채권국 대표들을 회동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파리클럽은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어떠한 설립조항(charter)이나 규약(by-law)도 없으나 주요 OECD국들이 지속적으로 파리클럽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파리클럽의 동향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파리클럽에서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결정은 모든 참가국들의 의견일치(consensus)를 통해 이루어진다.

2. 회원국

파리클럽은 민간부문의 수출신용(export credits)[11]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있는 모든 채권국들을 회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파리클럽의 사무국(secretariat)과 의장국은 1979년 이후부터 프랑스 재무성이 맡고 있다.

주요 OECD국들은 정규회원국이며 이외에 수출신용보증제도(export credit insurance system)가 있는 여타국들도 파리클럽에 참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이후 브라질은 12개 채무국과 18개의 협약을 체결한

11) 수출신용은 특정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기 위해 수출국의 수출기관이나 상업은행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Insured Private Export Credits은 수출국 정부기관(수출신용기관)에 의해 수출신용이 보증된 것으로 차입국의 외채상환양도나 정치적 위험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려는 방안임. 일반적인 채무보다 상환일이 길고 이자율도 시장이자율보다 낮음. Official Export Credits은 비행기나 전기발전설비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의 매입에 대한 수출신용으로 미국의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과 일본의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등이 있음.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상환일은 민간채무보다 장기간임.

바 있으며, 멕시코,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도 채권국으로서 파리클럽에 종종 참석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구소련연방국들, 동유럽국들, 중국은 파리클럽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양자간 협상을 통해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에 상응하는(동일한 조건은 아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다. OPEC 채권국도 양자간 협상을 통해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에 상응하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리클럽회의에 대한 참석은 대부분 채무국에 대해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진 채권국들의 대표만이 참석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채권을 가진 채권국들은 참관자(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다. IMF, 세계은행, UNCTAD, OECD, 지역개발은행들, EU 등도 참관자(observer) 자격으로 파리클럽에 참석하고 있다.

3. 채무재조정 대상 채무

파리클럽회의는 채무국이 대외지급불능(default) 상황이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채무재조정은 단기간(보통 12~18개월)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 이루어지고, 외채원리금(principal)과 이자율도 채무재조정의 대상이 되며 연체된 외채원리금과 이자율도 재조정될 수 있다. 채무재조정은 또한 기산일(cut-off date)[12]이전에 체결된 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간 채무나 정부에 의해 지급 보증된 수출신용은 채무재조정될 수 있지만[13] 단기채무(1년이하)나 채무 기산일(cut-off date)이후에 체결된 채무는 재조정될 수 없다. 재조정된 채무에 대해 부

12) 파리클럽 채권국들이 채무국들의 외채경감시 재조정대상의 채무의 결정을 위한 기산일로서 cut-off date 이전에 체결된 채무만을 재조정 대상으로 할 것인지 cut-off date 이후에 체결된 채무도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됨.

13) 파리클럽은 공공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채무는 주로 런던클럽을 통해서 리스케쥴링됨. 하지만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보증해 준 민간채무에 대해서는 공공채무의 성격을 지니므로 파리클럽을 통해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과되는 이자율인 유예이자율(moratorium interest rate)은 채무재융자(refinancing)에서 수출신용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들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다.

4. 채무재조정 협상 절차

채무재조정은 먼저 채무국의 재무장관이 파리클럽 의장에게 채무재조정을 위한 회의개최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채권국들은 채무재조정의 필요성과 협상일자 등을 논의한 후 채무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파리클럽 의장은 채권국 대표단과 비공식적인 협의를 가지기도 한다.

파리클럽 회의가 개최되기 수개월전 채무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채경감을 요구하기 위하여 외채경감을 받아야 하는 채무국의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경감되어야 될 외채총액과 향후 상환조건 등을 기술해 놓은 보고서(memorandum)를 준비하여 각 채권국 정부에게 제출하게 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파리클럽 회의를 개최하여 외채경감액과 상환조건 등을 결정하게 된다. 회의는 짧게 진행되며 하루 이상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파리클럽 회의에서 채권국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consolidation period)[14] 결정.
- 재조정대상 채무(수출신용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정부간 대출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 결정.
- 기산일(cut-off date)을 결정. cut-off date 이후에 체결된 채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됨.
- 이자율도 재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외채원리금만 재조정할 것인지 결정.
- 이전에 재조정을 받은 채무도 재조정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

14) 실제적인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HIPC Initiative의 경우 제1단계에서의 consolidation period는 3년이 되며 제2단계에서는 각국의 경제개혁프로그램 이행정도에 따라 consolidation period가 달라지게 됨.

하고 포함시킨다면 몇%를 재조정시킬 것인지 결정.

- ㅇ 기조정된 채무의 상환기일과 거치기간 결정.
- ㅇ 재조정되지 않은 채무의 상환조건 결정(원계약에서의 상환일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 결정).
- ㅇ 연체된 채무의 재조정 여부 결정.
- ㅇ 재조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율 결정.

외채경감액과 상환조건 등 협의사항들이 채권국간에 결정되면 "Agreed Minute(합의회의록)"을 작성하여 각국 대표들이 서명하게 된다. 합의회의록에는 재조정될 채무액, 조정대상 채무의 기산일(cut-off date), 채무재조정 기간(consolidation period)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합의회의록에 대한 채권국들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채무국은 개별 채권국들과 쌍무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채무국은 쌍무협상에서 채권국 정부와의 합의뿐 아니라 대출기관(lending agency)과의 합의도 도출해야 실제적인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쌍무협상에서는 i) 재조정될 채무액과 상환일 ii) 재조정된 채무에 부과될 이자율(유예이자율: moratorium rate)을 결정하게 된다. 초기 파리클럽회의에서는 채권국 대표단이 공통적인 유예이자율을 정했으나 오늘날에는 각 채권국의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채권국별로 유예이자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5. 채무재조정 조건

1980년대 초 파리클럽 채권국들은 빈곤국들에 대해 이자율 삭감,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을 통해 빈곤국들의 외채상환부담을 줄여주었으나 채무재조정이 빈곤국들의 외채부담을 줄이는데 큰 성과가 없었고, 이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는 빈곤국들의 외채를 경감시킴으로서 외채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게 되었다.

가. 토론토 조건(Toronto Terms)

1988년 10월부터 1991년 8월까지 시행된 채무재조정 조건으로 파리클럽은 1988년 10월 토론토 조건을 통해 빈곤국들의 공공채무를 현재가치(NPV)기준으로 최대 33%까지 경감시켜주자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허성 채무뿐 아니라 수출신용(export credit)이나 담보부채권(guarantees)과 같은 非양허성 채무에 대해서도 동 조건을 적용토록 하였다.

토론토 조건에서는 세계은행에 의해 IDA-only countries로 분류되고 심각한 외채상환부담과 만성적인 국제수지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빈곤국만을 대상국으로 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해서는 만기를 거치기간 14년을 포함하여 25년으로 확대하고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ODA가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국들이 다음 3가지 옵션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Option A- 외채의 3/4는 탕감하고, 나머지 1/4에 대해서는 만기를 거치기간 8년을 포함하여 14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적용

Option B- 외채탕감은 없지만 만기를 거치기간 14년을 포함하여 25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적용

Option C- 외채탕감은 없지만 만기는 거치기간 8년을 포함하여 14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3.5%나 시장이자율의 50%를 적용

1988년 10월부터 1991년 7월까지 총 20여개국이 토론토 조건을 통해 외채경감을 받았으며 볼리비아를 제외한 19개국이 모든 아프리카국이였다. 하지만 토론토 조건을 통해서는 빈곤국의 외채부담을 줄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외채경감의 비율을 상향조정한 런던 조건(London Terms) 일명 'Enhanced Toronto Terms' 이 제시되었다.

나. 런던 조건(London Terms)

1991년 11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시행된 조건으로 외채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경감토록 하고 만기는 거치기간 6년을 포함하여 23년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외채에 대해서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토록 하는 채무재조정 조건이다.

런던 조건에서는 채무전환(debt swap) 옵션을 도입하였고 또한 IMF 지원프로그램하에 3년간의 구조조정 및 경제안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파리클럽 채권국에 대한 채무를 현재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stock-of-debt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good-will clause'를 설정하여 사례별로 적용토록 하였다.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총 16개국이 동 조건에 의해 외채경감을 받았으며 16개국중 볼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프리카국이었다.

다. 휴스턴 조건(Houston Terms)

1990년 9월 파리클럽은 저중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ies)의 외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특별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휴스턴 조건이라 한다.

휴스턴 조건에서는 ODA 채무의 만기는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20년으로 하고 이자율은 원이자율보다 낮은 양허적인 조건의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며, ODA가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만기를 거치기간 8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하고 시장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휴스턴 조건은 심각한 외채상환부담을 안고 있고 총외채중 공공채무의 비중이 높으며, 1인당 GNP가 1990년 기준으로 611~2,465달러 이내인 중소득국을 채무재조정 대상국으로 하였다. 1993년말까지 14개국이 휴스턴 조건으로부터 채무재조정을 받았으며 자메이카, 모로코, 페루는 두 차례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여타 대부분의 중소

득국(middle-income countries)들도 동 조건에 따라 1991년부터 파리클럽의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한 만기 10년과 시장이자율을 적용하는 채무재조정을 받아왔다.

라. 나폴리 조건(Naples Terms)[15]

1995년 1월 이후부터 시행된 조건으로 현재가치 기준으로 외채를 최대 67%까지 경감토록 하는 채무재조정 조건이다.

채무국에 대한 나폴리 조건의 외채경감 결정은 채권국들이 채무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사례별(case-by-case basis)로 결정하게 되며, 토론토 조건이나 런던 조건에 의해 양허적인 채무재조정을 이미 받았던 국가들도 나폴리 조건의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폴리 조건은 공적개발원조(ODA)가 아닌 외채는 순현재가치(NPV)기준으로 최대 67%까지 경감하고, 1인당 GNP가 500달러 이상이고 수출대비 외채의 순현재가치 비율이 350%이하인 국가는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외채를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산일(cut-off date) 이전의 공적개발원조가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국의 국제수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외채경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론토 조건이나 런던 조건에 의해 양허적인 채무재조정을 이미 받았던 채무가 다시 나폴리 조건으로 채무재조정 받는 경우 경감비율은 나폴리 조건에서 제시하는 경감비율(67% 또는 50%)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채권국은 채무국의 채무를 순현재가치기준으로 67%나 50% 경감시켜주기 위해 채무경감 선택안과 채무원리금변제액경감 선택안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채무경감 선택안(DR: debt reduction option)은 상환일을 거치기간 6년 포함 23년 이상으로 연장시키는 것이고, 채무원리금변제액경감 선택안(DSR: debt-service reduction option)은 이자율 경감을 통해 채

15) Anthony R. Boote and Kamau Thugge. 1999. *Debt Relief for Low-Income Countries, The HIPC Initiative*. IMF Pamphlet Series No. 51. pp. 6~7를 참조.

무원리금상환액의 순현재가치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flow rescheduling[16]의 경우는 거치기간 없이 상환일을 33년이상으로 연장하며 stock-of-debt operation[17]의 경우는 상환일을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33년이상으로 연장시키고 있다. 50%의 외채경감시에는 상환일을 거치기간 6년을 포함하여 23년 이상으로 연장시킨다.

위 두가지 양허적인 선택안 외에도 상환일연장 선택안(LM: long maturities option)도 있으며 동 선택안은 외채의 순현재가치에 대한 경감 없이 상환일만 거치기간 20년을 포함하여 40년이상으로 연기시켜주는 것이다. 50%의 외채경감시에는 상환일을 거치기간 16년을 포함하여 25년이상으로 연기시킨다. 이 선택안을 선택한 채권국은 향후 양허적인 조건의 선택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산일(cut-off date) 이전의 공적개발원조(ODA)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만기를 거치기간 16년을 포함하여 40년이상으로 연장시키고 이자율은 원이자율보다 양허적인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외채경감율이 50%인 경우는 상환만기를 거치기간 12년을 포함하여 30년이상으로 연장시킴). 채권국은 ODA 채무의 순현재가치를 67%나 50%로 경감시켜 주는 양허적인 선택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마. 리용 조건(Lyon Terms)

1996년 9월 IMF/세계은행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41개 중채무국들(HIPCs)에 대하여 최대 67%까지 외채를 탕감해주는 나폴리 조건보다 더 높은 비율의 외채탕감을 통해 중채무국들의 경제자생력을 높이기로 결의하였다.

---

16) consolidation period 기간내에 상환일이 도래하는 채무를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 및 상환일 연기 등의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것.

17) cut-off date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를 양허적인 조건으로 재조정해 주는 것으로 cut-off date 이후에 상환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여야 함. IMF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1996년 11월 리용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외채를 최대 80%까지 경감토록 하자는 데 합의하였으며 HIPC Initiative에서의 외채 경감에서도 리용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표 Ⅲ-1> 파리클럽의 외채경감 조건 변화 추이

	중소득국	저중소득국(휴스턴 조건)[1]	저소득국[2]														
			토론토 조건			런던 조건				나폴리 조건				리용 조건			
			DR	DSR	LM	DR	DSR	CMI	LM	DR	DSR	CMI	LM	DR	DSR	CMI	LM
시 행	…	'90.9 이후	'88.10~'91.6			'91.11~'94.11				'95.1이후				'96.12이후			
거치기간(년)	5[1]	최대 8[1]	8	8	14	6	-	5	16[3]	6	3	8	20	6	8	8	20
만기(년)	9[1]	15[1]	14	14	25	23	23	23	25	23	33	33	40	23	40	40	40
이자율[4]	M	M	M	R[5]	M	M	R[6]	R[6]	M	M	R[7]	R[7]	M	M	R[8]	R[8]	M
순현재가치기준 외채경감율(%)	-	-	33	20~30[9]	-	50	50	50	-	67	67	67	-	80	80	80	-
공적개발원조(ODA)																	
거치기간(년)	5	최대 10	14	14	14	12	12	12	16	16	16	16	20	16	16	16	20
만기(년)	10	20	25	25	25	30	30	30	25	40	40	40	40	40	40	40	40

주: 1) 1992년 이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의 협의에서 채권자들은 외채의 상환만기를 중소득국에게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하고 저중소득국에게는 상환만기를 최대 18년까지 연장시킴.

2) DR은 debt-reduction option; DRS는 debt-service-reduction option; CMI는 capitalization of moratorium interest; LM은 장기간(longer maturities)의 비양허성 선택안(nonconcessional option)임.

3) 1992년 6월 이전에는 14년이였음.

4) 이자율은 시장이자율(M)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R은 reduced rates으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5) 시장이자율이 7%이하일 경우 3.5%를 적용하거나 시장이자율의 50%를 적용함.

6) 외채의 순현재가치가 50% 감소될 수 있을 정도의 이자율 적용.

7) 외채의 순현재가치가 67% 감소될 수 있을 정도의 이자율 적용.

8) 외채의 순현재가치가 80% 감소될 수 있을 정도의 이자율 적용.

9) 외채의 순현재가치 경감은 이자율의 경감정도에 따라 달라짐.

자료: Anthony R. Boote and Kamau Thugge. 1999. *Debt Relief for Low-Income Countries, The HIPC Initiative*. IMF pamphlet Series No. 51. pp. 30~31.

IV. 한국의 대응방안

1. Köln Initiative에 따른 우리나라의 對HIPC 외채경감 추정액

Köln Initiative가 1999년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채경감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중채무국들(HIPCs)에 대해 경감해주어야 하는 경감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감대상국, 외채경감 기산일(cut-off date), 대상국별 예상 경감비율 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1999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HIPC 대상국 9개국[18]에 공여한 자금은 대출잔액 기준(disbursement)으로 약 1억7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표 Ⅳ-1, Ⅳ-2 참조). 이중 EDCF 경협자금이 8,252만 달러, 수출금융(export credits)이 6,921만 달러, 민간금융기관이 2,192만 달러를 대출하였으며, 또한 대출 승인은 받았으나 미집행된 금액도 약 2억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어서 이들 10개국에 대한 총 exposure(기지원잔액 + 집행예정액)는 4억 2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대출이 파리클럽 기산일 이후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Köln Initiative가 실행되더라도 우리나라의 HIPC 외채경감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표 Ⅳ-5, Ⅳ-6 참조).

가나에 빌려준 EDCF 자금 75억원(약 650만 달러)만 대상채권이 되는데, 이 경우 EDCF 이자율보다 최소한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16년 거치 40년 상환의 만기연장을 통한 외채경감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경감액은 EDCF 자금지원의 무상지원비율(grant element)이 약 40~50%인 것을 감안하면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300만

18) 베트남, 미얀마, 가나, 앙골라, 케냐, 온두라스, 니카라과, 우간다, 볼리비아.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미얀마의 경우는 아직 파리클럽과 어떠한 채무재조정 협약도 맺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미얀마가 새로이 파리클럽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이 최소 1999년 이후로 될 것이므로[19] 미얀마에 대한 기지원액 약 4천만달러가 대상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집행액(약 2천2백만 달러)의 상당부분도 미얀마의 채무조정시의 파리클럽 기산일에 따라 대상채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얀마는 아직 IMF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이내에 나폴리조건이나 리용조건에 따른 파리클럽의 외채경감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얀마가 민주화되고 IMF/IDA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하는 경우, 3년간의 성공적인 IMF 프로그램 이행 없이도 front-loading 성격의 외채경감을 파리클럽이 제공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표 Ⅳ-1> HIPC에 대한 한국의 지원잔액(1999년 6월말 기준)

(단위: 천 달러)

지 원 형 태	지 원 잔 액
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잔액 (수출입은행)	82,525
수출입은행 수출자금 등	69,212
시중은행 지원금	21,926
합 계	169,432

자료: 유길상. 1999.「선진국의 고채무저소득국(HIPC)에 대한 신채무구제조치(New Debt Initiative)와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p. 15에서 재구성.

19) 기산일(cut-off date)은 원칙적으로 채무국이 파리클럽에 채무재조정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임.

<표 Ⅳ-2> 한국의 HIPC국에 대한 지원현황

(단위 : 천 달러)

국가명	EDCF			수출금융			상업금융기관 대출잔액 (G)	총 계		
	대출잔액 (A)	미집행액 (B)	Exposure (C=A+B)	대출잔액 (D)	미집행액 (E)	Exposure (F=D+E)		대출잔액 (A+D+G)	미집행액 (B+E)	Exposure (C+F+G)
베트남	16,436	52,595	69,031	68,274	22,898	91,172	17,695	102,405	75,493	177,898
미얀마	40,398	865	41,263	-	21,200	21,200		40,398	22,065	62,463
가나	12,024	-	12,024	-	125,800	125,800		12,024	125,800	137,824
앙골라	-	10,034	10,034				4,231	-	10,034	14,265
캐냐	8,996	519	9,515	808	-	808		9,804	519	10,323
온두라스	-	6,314	6,314	34	-	34		34	6,314	6,348
니카라과	-	6,055	6,055					-	6,055	6,055
우간다	4,671	-	4,671					4,671	-	4,671
볼리비아				96	-	96		96	-	96
계	82,525	76,382	158,907	69,212	169,898	239,110	21,926	169,432	246,280	419,943

주: 1999년 7월 현재 베트남, 앙골라, 캐냐는 HIPC Initiative 적격국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료: 유길상(1999)의 자료를 환율 US 1$=₩ 1,156를 적용하여 재구성.

<표 Ⅳ-3> 한국이 자금지원하고 있는 중채무국들의 외채상환능력지표(1996년 기준)

(단위: %)

국가명	외채의 순현재가치/수출	외채원리금변제액/수출	공공외채상환변제액/재정수입[1]	공공외채상환변제액/정부지출	세입/GDP	공공무상공여/GDP	공공담보부외채/GDP
베트남	86.8	6.8	11.4	11.0	19.6	0.6	26.2
미얀마	-	-	-	-	-	-	-
가나	253.1	27.3	29.1	-	-	-	-
앙골라	-	-	-	-	-	-	-
케냐	147.1	24.3	27.8	26.6	25.1	1.3	45.3
온두라스	211.6	32.3	70.7	59.9	16.5	0.2	71.7
니카라과	661.9	108.9	134.6	99.3	-	5.2	205.9
우간다	293.8	18.1	18.2	11.3	10.5	4.5	31.0
볼리비아	270.2	25.4	-	-	17.4	2.4	44.6

주: 1999년 7월 현재 베트남, 앙골라, 케냐는 HIPC Initiative 적격국에서 제외되어 있음.
1) 무상공여(grants)는 제외.

자료: Anthony R. Boote and Kamau Thugge. 1999. *Debt Relief for Low-Income Countries, The HIPC Initiative*. IMF Pamphlet Series No. 51. pp. 24~26에서 재구성함.

<표 Ⅳ-4> 한국이 자금지원하고 있는 중채무국들의 채권자별 외채구성과 파리클럽으로부터의 외채경감 현황

국가명	총공공채무(1996년말기준)[1]		파리클럽으로부터의 나폴리 조건의 채무재조정에 적격한 국가	非파리클럽 채권자들에 대해 상당액의 채무가 있는 국가			
	총액 (십억달러)	다자간 기관에 대한 채무 비중(%)		상업은행	IMF	세계은행	기타
베트남	23.9	4.1	√[2]	√			
미얀마	5.2	25.4		√			
가나	5.2	70.9			√		
앙골라	9.3	2.4					
케냐	6.1	53.7				√	
온두라스	4.0	55.5	√[3]			√	√
니카라과	5.3	30.4	√[3]	√	√		√
우간다	3.7	77.4	√[4]		√	√	
볼리비아	4.8	61.6	√[4]				√

주: 1999년 7월 현재 베트남, 앙골라, 케냐는 HIPC Initiative 적격국에서 제외되어 있음.
1) 정부가 보증한 공공채무.
2)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으로부터 졸업함(Exit rescheduling).
3) 파리클럽으로부터 양허적인 조건의 채무재조정을 받았던 국가.
4) 1995년이나 1996년에 나폴리 조건의 채무재조정(stock-of-debt operation)이 합의된 국가.

자료: Anthony R. Boote and Kamau Thugge. 1999. *Debt Relief for Low-Income Countries, The HIPC Initiative.* IMF Pamphlet Series No. 51. pp. 28~29에서 재구성함.

<표 Ⅳ-5> HIPC국가에 대한 EDCF 지원현황(1999. 6. 30 현재)

(단위: 억원)

국 가 별	승인연도별	Cut-off date (전통적 파리클럽)	지원잔액	미집행액	Exposure
베 트 남	1995	1990. 1. 1	190	193	383
	1997	1990. 1. 1	-	415	415
온 두 라 스	미체결	1990. 6. 1	-	73	73
니 카 라 과	미체결	1998. 11. 1	-	70	70
케 냐	1994	1991. 12. 31	104	6	110
앙 골 라	미체결	1986. 12. 31	-	116	116
우 간 다	1992	1981. 7. 1	54	-	54
가 나	1991	1993. 1. 1	75	-	75
	1996	1993. 1. 1	64	-	64
미 얀 마	1993	없음	57	-	57
	1995	없음	135	1	136
	1997	없음	277	7	284
합 계			956	881	1,837

주: 1999년 7월 현재 베트남, 앙골라, 케냐는 HIPC Initiative 적격국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료: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9; 유길상(1999).

<표 Ⅳ-6> HIPC국가에 대한 수출자금 지원현황(전대자금 포함)(1999. 6. 30 현재)

(단위: 천 달러)

국 가 별	승인연도별	Cut-off date (전통적 파리클럽)	대출잔액	미집행액	Exposure
베 트 남	1994	1990. 1. 1	26	-	26
	1995	1990. 1. 1	4,662	-	4,662
	1996	1990. 1. 1	3,003	-	3,003
	1997	1990. 1. 1	60,585	300	60,885
	1999	1990. 1. 1	-	22,598	22,598
온 두 라 스	1996	1990. 6. 1	34	-	34
볼 리 비 아	1997	졸업	96	-	96
케 냐	1997	1991. 12. 31	808	-	808
가 나	1999	1993. 1. 1	-	125,800	125,800
미 얀 마	1999	없음	-	21,200	21,200
합 계			69,214	169,898	239,112

주: 1999년 7월 현재 베트남, 앙골라, 케냐는 HIPC Initiative 적격국에서 제외되어 있음.
자료: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9; 유길상(1999).

2. 기산일(cut-off date) 변경에 따른 잠재적 외채경감액 및 기타 고려사항

기산일은 한번 정해지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국가에 대해서 기산일 이전에 빌린 대외채무를 완전 탕감하더라도 그 국가가 외채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는 파리클럽이 예외사항으로서 기산일을 연장하여 대상채무를 확대해 주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기산일이 연장되었던 경우는 파리클럽의 외채경감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9회밖에 없었으며, 최근 파키스탄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1986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20] 파키스탄의 경우는 최초의 기산일이 1980년 7월 1일에서 이번에 1997년 9월 30일로 대폭 연장되었는데 이는 파키스탄의 극심한 외채위기로 인한 대외지불중지선언이 자칫 아시아 위기, 러시아, 중남미 위기의 연장선상에서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심리적 영향을 우려한 파리클럽의 배려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다.

물론 기산일을 HIPC 대상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연장가능성은 IMF/세계은행이 채무국정부와 공동으로 행하는 외채상환능력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의 결과에 달려있다. Köln Initiative하의 DSA에서는 기존의 파리클럽 기산일을 기준으로 기산일 이전 대상채무의 규모를 확정한 뒤 그 대상채무의 90% 이상의 탕감을 가정했을 때 그 국가의 외채 상환능력이 안정적(sustainable)이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만약 탕감 후에도 여전히 불안정적인 경우에는 기산일을 연장하여 대상채무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99년 6월에 발표된 G7 재무장관 보고서의 내용이나 세계은행 HIPC 담당자의 견해를 종합해볼 때 기산일을 연장해야할 정도로 극심한 외채부담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연장하는 것은 현재 나폴리조건, 리용조건(HIPC Initiative), Köln Initiative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기존의 파리클럽 외채경감 메카니즘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그러한 예가 없었다.[21]

베트남의 경우는 1999년 7월 현재 HIPC Initiative 적격국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22] 베트남[23]은 우리 나라의 지원잔액과 exposure가 가장 많

20) 세계은행,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9, pp. 129~139.

21) 하지만 1999년 가을에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自國의 對빈곤국 채권에 대한 기산일을 1997년 1월 1일로 하고 이를 파리클럽에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22) <표 Ⅱ-4>, <표 Ⅱ-5> 참조.

23) 지원잔액 1억2백만 달러, 미집행액 7천5백만 달러, 합계 (exposure) 1억7천7백만 달러.

은 중채무국이므로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HIPC Initiative 적격국에서 제외되기 이전에도 이미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을 졸업(exit reschedulings)하였을 뿐만 아니라 HIPC Initiative가 극빈국에 대한 외채경감이라는 국가의 이미지 문제로 HIPC Initiative로부터 외채경감 받기를 주저한 상황이었다. 또한 세계은행은 베트남에 대해 실제로 HIPC 외채경감을 위한 출장조사팀을 파견하여 실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베트남 정부가 외채경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서 조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Köln Initiative상의 수혜적격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베트남이 Köln Initiative에 의한 외채경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지표 상으로 보더라도 베트남의 외채상환부담은 여타 HIPC 국가보다 양호[24]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외채경감을 받아들이더라도 최대 외채경감조건은 나폴리조건 정도로 전망된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상황과 Köln Initiative의 조건은 가변적인 것으로 또다시 베트남이 외채경감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G7은 보고서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ODA에 대해서 무상공여를 원칙으로 할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권장사항이지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이다. 우선 채무국의 입장에서 양허적조건의 자금지원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상당한 혜택이 돌아오므로 기존의 ODA 지원국에 신규 ODA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무리하게 요구하여 지원이 끊기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며, 또한 신규 ODA 무상지원 문제와 기존의 ODA 지원에 대한 100% 탕감논의는 G7 국가간에도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25]

파리클럽은 외채경감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는 외채경감 수혜국이 비양허적인(nonconcessional) 차관은 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비양허적 차관도입이 외채경감 수혜국의 외채상환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24) <표 Ⅱ-5> 참조.

25) 프랑스와 캐나다가 100% 탕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등 일부국가들은 국내 정치권의 여론을 감안하여 유보적임. 100% 탕감의 경우에도 기존의 기산일 이전 ODA 지원만 대상이 됨.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26]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들 국가에 대한 신규 수출금융은 양허적인 조건으로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게되므로[27] 수출금융 이자율을 양허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야 신규 지원이 가능하다.

3. 파리클럽의 동등대우 조항의 적용 문제

파리클럽이 채무국과 맺는 협약에는 동등대우(pari-passu) 조항(comparable treatment clause)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채무국이 파리클럽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채권국 또는 상업채권자와 양자간 외채경감협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파리클럽으로부터 받는 채무경감조건보다 더 나쁜 조건의 외채경감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동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리클럽은 외채경감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록 파리클럽이 여타 채권자들에 대해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지만, 파리클럽은 채무국을 통하여 非파리클럽 채권자들이 파리클럽의 외채경감조건과 최소한 동등한 조건으로 외채경감을 하도록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28] 예를 들면 채무국은 파리클럽과 동등한 조건으로 외채경감을 해주기로 거부하는 채권국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환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IMF는 해당 채무국에 대한 제재를 전혀 취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29] 따라서 파리클럽에 참여하건 안하건 간에 파리클럽이 정한 외채경감조건을 따르지 않고 대상

26) 이러한 제한조치는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IMF와 세계은행의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러한 제한조치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일환으로 점검하고 있음.

27) 기존에 제공된 수출금융은 양허적이지 않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음.

28) World Bank Development Committee, The Initiative for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Review and Outlook, September 1998, p. 45.

29) 이 경우에 IMF의 외채통계표에는 "debt under negotiation"으로 나타나게 되며 연체(arrears)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지 않고 파리클럽 주요 참가국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여 외채탕감액을 최소화하는 논리를 개발한다는 복안은 현 국제경제질서하에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보다 더욱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브라질이 파리클럽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나 파리클럽에 속하지 않은 멕시코가 한창 외환위기를 겪고 있었던 1996년에 니카라과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를 경감해준 사례[30]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어떠한 논리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파리클럽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로 판단된다.

4. 파리클럽 참가 문제

이처럼 파리클럽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가 파리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적극적인 원조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격상에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은 국제사회의 빈곤국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비례하기 마련이며 선진국이 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지원에 따르는 비용보다 잠재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경제논리의 결과이다. 특히 EDCF와 같은 경협자금은 tied loan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부담액은 명목 지원액보다 훨씬 작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협자금을 공여하는데 있어서 이의 功過를 상업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30) Development Committee (1998), p. 32.

<부록 1> 중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

가. HIPC Initiative의 목적

1996년 9월 IMF와 세계은행은 IMF 및 세계은행 지원의 구조조정 및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重채무국들의 외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 重債務國 外債問題解決戰略(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을 마련하였다. HIPC Initiative는 중채무국들이 외채를 자체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수준 이하로 경감시켜줌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파리클럽,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IMF)들, 여타 상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나. HIPC Initiative 수혜조건

세계은행과 IMF는 HIPC Initiative를 통해 외채를 경감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혜국이 IMF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양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IMF의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31]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회원국이나 IDA-only 회원국[32]이어야 하고 traditional debt-relief mechanism

---

31) 확대구조조정금융제도(ESAF)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나 외채문제를 겪고 있는 最貧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장기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IMF의 자금지원제도임. ESAF의 재원은 IMF의 자체재원외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며, 1996년 기준으로 1인당 GNP가 925달러 이하인 최빈개도국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음.

32)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부터만 자금지원을 받는 국가임. 일반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IBRD와 IDA를 일컫는 것으로 IBRD는 중소득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DA는 저소득개도록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업무지침에는 회원국의 1인당 GNP가 1,505달러(1996년 경상가격, Atlas 추정방식)를 넘지 않아야 IDA-only countries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1인당 GNP가 925달러 이하인 최빈국들(IDA-only countries)에게 대부분의 IDA 자금이 공여되고 있음.

s[33]으로는 적정수준 이상의 채무경감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회원국이며, IMF 및 세계은행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개혁 및 건전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회원국이여야 한다.

현재 IMF와 세계은행은 HIPC Initiative로부터 외채경감을 받을 수 있는 중채무국을 41개 개발도상국[34]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41개 중채무국들은 1993년기준 1인당 GNP 수준이 695달러이하거나, 1993년 기준 수출대비 외채의 순현재가치 비율이 220% 이상인 국가 또는 GNP대비 외채의 현재가치 비율이 80% 이상인 32개국과 파리클럽으로부터 양허적인 조건의 채무재조정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HIPC Initiative 지원절차[35]

(1) 1단계(First phase)

HIPCs Initiative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먼저 IMF 및 세계은행에 의해 지원되는 3년 기간의 구조조정 및 개혁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모든 관련 자금공여국들과 국제기구들로부터 전통적인 양허적인 조건의 금융지원(traditional concessional assistance)과 파

33) 전통적인 채무경감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침 1)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양허적인 융자에 의해 지원되는 금융 및 경제개혁 채택 2)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하에 파리클럽채권자들과 양허적인 조건의 채무재조정 협약 체결 3) 상업적인 채무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의 채무경감활동의 지원을 받아 파리클럽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해 최소한의 상응할만한 조건으로 협약체결 4) 채권자들에 의한 채무탕감 5) 적절한 양허적인 조건으로 새로운 자금제공.

34) 앙골라, 베냉, 볼리비아, 버키나 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코트디브와르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적도 기네, 에디오피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공화국, 가이아나, 혼두라스, 케냐, 라오스,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말라위,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미얀마, 니카라과,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베트남, 에멘 공화국, 잠비아.

자료: IMF. *Debt Initiative for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 March 1999.*

35) <부록 圖 1> 참조.

리클럽을 포함한 채권단 모임으로부터 외채경감(debt relief)을 받게 된다.

파리클럽 채권국들은 나폴리 조건(Naples terms)[36]에 따라 기산일(cut-off date) 이전의 채무중 이 기간(consolidation period)중 상환예정인 외채원리금을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최대 67%까지 경감시켜 주게 되며(flow rescheduling) 여타 양자간 및 상업채권자들도 파리클럽의 외채경감에 상응하는 수준의 외채경감을 실행하게 된다.

(2) 심의시점(Decision point)

1단계(first phase) 시기의 끝무렵 채무국의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IMF/세계은행 상임이사회는 외채관리능력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을 실시하게 되는데 외채관리능력분석(DSA)[37]은 채무국의 외채현황과 이에 대한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채무국이 파리클럽의 67%의 외채경감과 공공양자간 및 상업채권자들의 이에 상응하는 외채경감 등을 통해 완결시점(completion point)까지 외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세계은행과 IMF는 DSA 결과 채무국이 외채를 완결시점까지 적정수준 이내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제 2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외채경감이 불필요하므로 나폴리 조건에 따라 최대 67%까지 외채를 경감(stock-of-debt operation)시키고 HIPC Initiative로부터 채무국을 졸업(exit)시키게 된다. 하지만 DSA결과 채무국이 외채를 완결시점까지 적정수준이내로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HIPC Initiative를 계속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SA결과 채무국이 외채를 완결시점까지 적정수준이내로 낮출 수 있을지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borderline)에는 완결시점까지 파리클럽 채권국에 의한 나폴리 조건에 따른

36) 빈곤국에 대한 양허적인 외채경감조건으로 1994년 12월 파리클럽에 의해 승인된 조건이며 사례별로 적용되고 있다. 동 조건에 따라 빈곤국은 순현재가치기준으로 외채를 최대 67%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

37) 수출대비 외채의 현재가치 비율이 200~250% 이하, 수출대비 외채원리금 변제액(debt service)의 비율이 20~25%이상, 완결시점에서 재정수입(fiscal revenues)대비 외채의 현재가치 비율이 280%이하인지를 평가함.

stock-of-debt operation을 연기시킬 수 있고 제2단계 기간동안 나폴리 조건하의 채무재조정(flow reschedulings)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2단계(Second phase)

심의시점에서 채무국이 자체적으로 외채를 적정수준으로 낮출 능력이 없어서 HIPCs Initiative의 수혜조건에 적합하게 되면 해당국은 IMF/세계은행이 지원하는 3년간의 프로그램을 다시 채택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좋은 거시경제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파리클럽 채권국들은 상환예정인 외채원리금을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경감시켜주며(flow rescheduling), 여타 양자간 및 상업채권단들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외채경감을 시행하게 된다. 양자간채권자 및 다자간기관(multilateral institutions)은 무상공여(grants)나 양허성융자(concessional loan) 의 형태로 자금지원을 제공하며 세계은행은 이 기간동안 IDA grants와 supplemental IDA allocation을 제공하게 된다.

(4) 완결시점(Completion point)

IMF/세계은행의 총 6년간의 경제개혁프로그램이 완결된 시점에서 채무국이 적정수준이하로 외채를 낮추었을 경우 파리클럽은 채무국의 외채를 순현재가치기준으로 80%까지 경감시켜 주며(stock-of debt reduction), 여타 양자간 및 상업채권단들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외채를 경감시켜주게 된다.

또한 IMF 및 세계은행을 포함한 여타 다자간기구들도 모든 채권자들과 협력하여 해당국이 외채를 적정수준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추가지원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IMF는 ESAF을 통해 자금을 무상공여(grant)하는 방식으로 추가지원하게 되는데 이런한 형태의 자금지원은 반드시 IMF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IMF와 공동으로 설치한 HIPC 신탁기금과 국제개발협회(IDA)의 무상공여를 통해 외채경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 HIPC Trust Fund ▶

동 기금은 HIPC Initiative의 빈곤국 외채경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국제개발협회(IDA)에 의해 운영되어지며 재원은 IBRD의 순이익과 이익잉여금과 다자간 채권단이나 여타 자금공여국들의 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있음.

1999년 9월 15일 현재 약 2억6,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출연되었으며 추가로 2억4,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출연될 것 예정이며 또한 ISF(Interest Subsidy Fund)를 통해서도 약 8,800만 달러의 자금이 조달될 예정임.

* 자금공여국들의 출연금 - 약 2억6,000만 달러

캐나다	-	500만 달러
덴마크	-	2,300만 달러
핀란드	-	1,400만 달러
그리스	-	100만 달러
아일랜드	-	1,600만 달러
일본	-	1,000만 달러
룩셈브르크	-	50만 달러
네덜란드	-	3,800만 달러
노르웨이	-	3,700만 달러
포르투갈	-	1,500만 달러
스페인	-	1,500만 달러
스웨덴	-	2,900만 달러
스위스	-	2,800만 달러
영국	-	2,500만 달러

* 추후 출연약정액 - 2억4,000만 달러

벨기에 - 1999년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800만 달러(600만 SDR)를 출연할 것을 발표

영국 - AfDB에 3,000만 GBP(5,000만 달러), Köln Initiative 지원의 일환으로 동 기금에 1억 달러 지원할 것을 발표

독일 - 5,000만 DM을 동 기금에 지원하기로 약정

미국 - 미 행정부는 2000년 예산안에서 동 기금에 대해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의회에 제안함

호주 - 동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발표했으나 출연액과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음

* ISF에 대한 출연약정액 - 8,800만 달러

영국: 1,110만 달러, 프랑스: 2,070만 달러, 네덜란드: 2,280만 달러,
벨기에: 370만 달러, 노르웨이: 440만 달러, 룩셈부르크: 10만 달러,
캐나다: 2,200만 달러, 덴마크: 3,300만 달러

라. HIPC Initiative 지원실적

1996년 9월 HIPC Initiative가 채택되고 3년이 지난 1999년 12월 현재 세계은행은 41개 중채무국중 14개국을 HIPC Initiative의 외채경감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중 12개국(볼리비아, 버키나 파소, 코트디브와르, 가이아나, 말리, 모잠비크, 우간다, 에디오피아,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니카라과, 탄자니아)은 HIPC Initiative로부터 외채경감을 받을 수 있는 외채비율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나머지 2개국(베닌, 세네갈)은 그렇지 못하다.

볼리비아, 버키나 파소, 코트디브와르, 가이아나, 말리, 모잠비크, 우간다 등 7개국은 HIPC Initiative로부터 완결시점에서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34억 달러(명목기준은 약 68억 달러)의 외채를 경감받게 된다. 이중 우간다, 볼리비아, 가이아나, 모잠비크 등 4개국은 이미 완결시점을 지났으며 HIPC Initiative로부터 외채경감을 받은 상황이다.

에디오피아, 기니비사우, 모리타니아, 니카라과, 탄자니아 등 5개국에 대해서는 HIPC Initiative의 예비적 점검이 완료된 상황이며, 에디오피아와 기니비사우는 내전을 이유로 외채경감지원이 연기된 상황이다.

베닌과 세네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외채경감 메카니즘을 통해서도 외채상환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이들 두 국가를 HIPC Initiative의 적격국에서 제외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외채경감조건이 보다 완화된 Köln Initiative하에서는 외채경감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부록 표 1> HIPC Initiative 지원실적

국가	심의 시점	완결 시점	외채의 순현재 가치/수출(%)	완결시점에서의 외채경감액 (순현재가치기준, 백만달러)					순현재 가치 기준의 외채경감율(%)[1]	명목 외채경감액 (백만달러)
				합계	양자간	다자간	IMF	세계은행		
완결시점을 지난 국가(외채경감을 받은 국가)										
우간다	1997.4	1998.4	202	347	73	274	69	160	20	650
볼리비아	1997.9	1998.9	225	448	157	291	29	54	13	760
가이아나	1997.12	1999.3	107[2]	256	91	165	35	27	24	410
모잠비크	1998.4	1999.6	200	1,716	1,076	641	125	381	63	3,700
심의시점을 지난 국가(IMF,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약정을 받은 국가)										
버키나파소	1997.9	2000.4	205	115	21	94	10	44	14	200
코트디브와르	1998.3	2001.3	141[2]	345	163	182	23	91	6[3]	800
말리	1998.9	1999.12	200	128	37	90	14	44	10	250
7개국에 대한 총 외채99.6경감액				3,355	1,618	1,737	305[4]	801	20	6,770
예비적 심사단계가 완료된 국가(외채경감 여부는 가변적임)										
에디오피아	1999[5]	2002	200	636	225	411	22	214	23	1,300
기니비사우	2000[6]	2003	200	300	148	153	8	73	73	600
모리타니아	1999.7[7]	2002	200	271	114	157	21	43	25	550
니카라과	1999말[8]	-	-	-	-	-	-	-	-	-
탄자니아	2000초[8]	-	-	-	-	-	-	-	-	-
HIPC Initiative로부터의 외채경감이 불필요한 국가										
베닌	1997.7	-	-	-	-	-	-	-	-	-
세네갈	1998.4	-	-	-	-	-	-	-	-	-

주: 1) 전통적인 외채경감 메커니즘을 통한 외채경감 이후 완결시점에서의 순현재가치 기준의 외채경감율
2) 완결시점에서 HIPC Initiative의 재정기준(외채의 순현재가치/재정수입 < 280%)에도 적합한 국가(가이아나) 및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코트디브와르)
3) 파리클럽의 채권국이 아니거나 런던클럽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채무재조정을 받은 외채는 제외
4) 2억1,200만 SDR 상당
5) 내전으로 인해 연기
6) 전후회복프로그램(post-conflict recovery program)하에서의 정책수행 이후 외채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
7) 세계은행 상임이사회는 모리타리아가 IMF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ESAF 협약이 체결된 1999년 7월에 심의시점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데 합의
8) Köln Initiative하에서 재검이 필요

자료: Anthony R. Boote and Kamau Thugge. 1999. *Debt Relief for Low-Income Countries, The HIPC Initiative*. IMF Pamphlet Series No. 51. p. 39; IMF and World Bank Board decisions, completion point documents, decision point documents, preliminary HIPC documents, and staff calculations; World Bank. HIPC Initiative Progress to date (http://www.worldbank.org/hipc/progress-to-date/progress-to-date.html)에서 재구성.

<부록 圖 1> HIPC Debt Initiative 지원절차

1단계
(First Stage)

- 파리클럽: 나폴리 조건(외채의 순현재가치를 최대 67%까지 경감)으로 3년이내에 상환일이 도래하는 외채원리금에 대해 외채경감(flow rescheduling).
- 여타 양자간 및 상업채권자: 파리클럽에 상응하는 수준의 외채경감 실행
- 다자간 기관: 세계은행/IMF의 지원프로그램하에 조정지원 제공
- 채무국: 3년간 양호한 거시경제실적 달성에 주력

심의시점
(Decision Point)

졸업(Exit)

- 완결시점까지 자체관리가 가능한 외채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나폴리 조건(외채의 순현재가치 67% 경감)의 외채경감 후 HIPC Initiative에서 졸업시킴.

적격국(Eligible)

- 완결시점까지 채무국이 외채를 자체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나폴리 조건의 외채경감(stock-of-debt operation)을 받음. 채무국은 HIPC Initiative하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세계은행/IMF 상임이사회는 이를 결정

2단계
(Second Stage)

- 파리클럽: 상환예정인 외채원리금을 순현재가치기준으로 최대 80%[1]까지 경감
- 여타 양자간 및 상업채권자: 파리클럽에 상응하는 수준의 외채경감조치 시행
- 자금공여국 및 다자간 기관: 1단계보다 더욱 향상된 조건으로 지원
- 채무국: IMF/세계은행 지원 프로그램하에 3개년간 양호한 거시경제실적 달성에 주력

보류(Borderline)

- 완결시점까지 나폴리 조건의 외채경감(stock-of-debt operation)으로도 자체관리가 가능한 외채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는 국가는 향후 나폴리 조건에 따라 채무재조정(flow rescheduling)을 받을 수 있음.
- 완결시점에서 예상보다 호전될 경우 파리클럽으로부터 나폴리 조건의 외채경감(stock-of- debt operation)을 받을 수 있고 여타 양자간 및 상업채권자들로부터도 이에 상응하는 외채경감을 받게됨.
- 완결시점에서 예상보다 외채관리수준이 더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HIPC Initiative하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완결시점(Completion Point)

- 파리클럽: 외채원리금을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80%까지 경감
- 여타 양자간 및 상업채권자: 파리클럽에 상응하는 수준의 외채경감조치 시행
- 다자간 기관: 외채를 자체관리 가능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조치 강구

주: 1) 1996년 리용 G7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결정된 조건임.

자료: 장형수 · 이창재 · 박영곤. 1998.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98-11. p. 171; Anthony R. Boote and Kamau Thugge. 1999. *Debt Relief for Low-Income Countries, The HIPC Initiative*. IMF Pamphlet Series No. 51. p. 12.

<부록 2> 채무재조정(Debt Restructuring)의 유형 및 대상

채무국이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default)이나 지불유예(moratorium)를 선언하게 되면 채권국들은 채무회수를 위하여 채무의 상환조건을 조정하거나 채무를 삭감해주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채무재조정이라 한다.

채무재조정에는 채무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연장시켜주는 채무상환연기(debt rescheduling), 이자율 조정, 가산금리 축소 등 채무상환 조건을 변경시켜주는 채무조건재조정(debt renegotiation), 상환되지 못하는 원리금을 추가대출금으로 간주하여 신규차관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채무재융자(refinancing), 일정부분의 채무를 삭감해주는 채무경감(debt reduction) 등이 있다. 채무경감방안(debt relief)으로는 채무탕감(debt forgiveness)[38], 채무전환(debt conversion)[39], 채무재매입(debt buy-backs)[40] 등이 있다.

<부록 표 2> 채무재조정의 유형별 비교

구 분	내 용
채무상환연기 (rescheduling)	기존 외채의 원리금 상환일을 연장시켜주는 방식
채무조건재조정 (renegotiation)	금리인하 조정, 가산금리 축소 등 채무상환 조건을 변경시켜 주는 방식
채무재융자 (refinancing)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원리금을 추가대출금으로 간주하여 신규 차관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채무 경감 (debt reduction)	대부분 상환불능인 민간 상업채무를 대상으로 일정부분의 채무를 삭감해주고 나머지의 회수를 확실시하기 위한 방식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1999.『국별 모라토리엄 배경과 채무재조정』, p. 5.

38) 채무탕감(Debt Forgiveness/cancellation)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임.

39) 채무전환(Debt Conversion)은 채무를 여타 부채(liability)로 전환시키는 것임. 즉 외채를 자국통화(local currency)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를 자국기업의 주식을 매입(Debt-equity swaps)하거나 보건, 교육, 환경 등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로 활용하는 것임.

40) 채무재매입(debt buy-backs)은 연체된 채무를 원리금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repurchase)하는 것으로 채무국의 외채상환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함.

채무재조정시 채권국들 단독에 의한 채무재조정보다는 파리클럽과 같은 다자간포럼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해주고 있다. 채무재조정을 위한 포럼은 협상해야할 채권의 형태(type of credits)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수출신용(export credit)에 대해서는 채권국 정부에 의해 보증된 경우는 파리클럽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채권국 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리클럽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채권국 상업은행들의 협의회에 의해 구성된 특별운영위원회(special steering committees)나 은행자문위원회(bank advisory committees) 등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OECD국간의 채무는 파리클럽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만 다자간기관(multilateral organizations)에 대한 채무는 채무재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록 표 3> 채무재조정을 위한 포럼

채 무 형 태	협 상 포 럼
1. 다자간기관에 대한 채무	채무재조정 대상이 아님
2. 채권국 정부에 대한 채무	
OECD국	파리클럽
OPEC국	파리클럽, 하지만 대부분 양자간협상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짐
CPE국	양자간 협상
기타	보증된 수출신용(insured exports)인 경우만 파리클럽을 통해서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자간 협상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짐.
3. 상업은행에 대한 채무:	
보증된 수출신용 (Insured export credit)	파리클럽
여타 채무	상업은행 협의회(consotia)
4.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s)	
보증된 경우(insured)	파리클럽
보증되지 않은 경우(not insured)	양자간 협상

자료: World Bank. *Managing External Debt in Developing Countries*, p. 186.

< 부록 圖 2> 외채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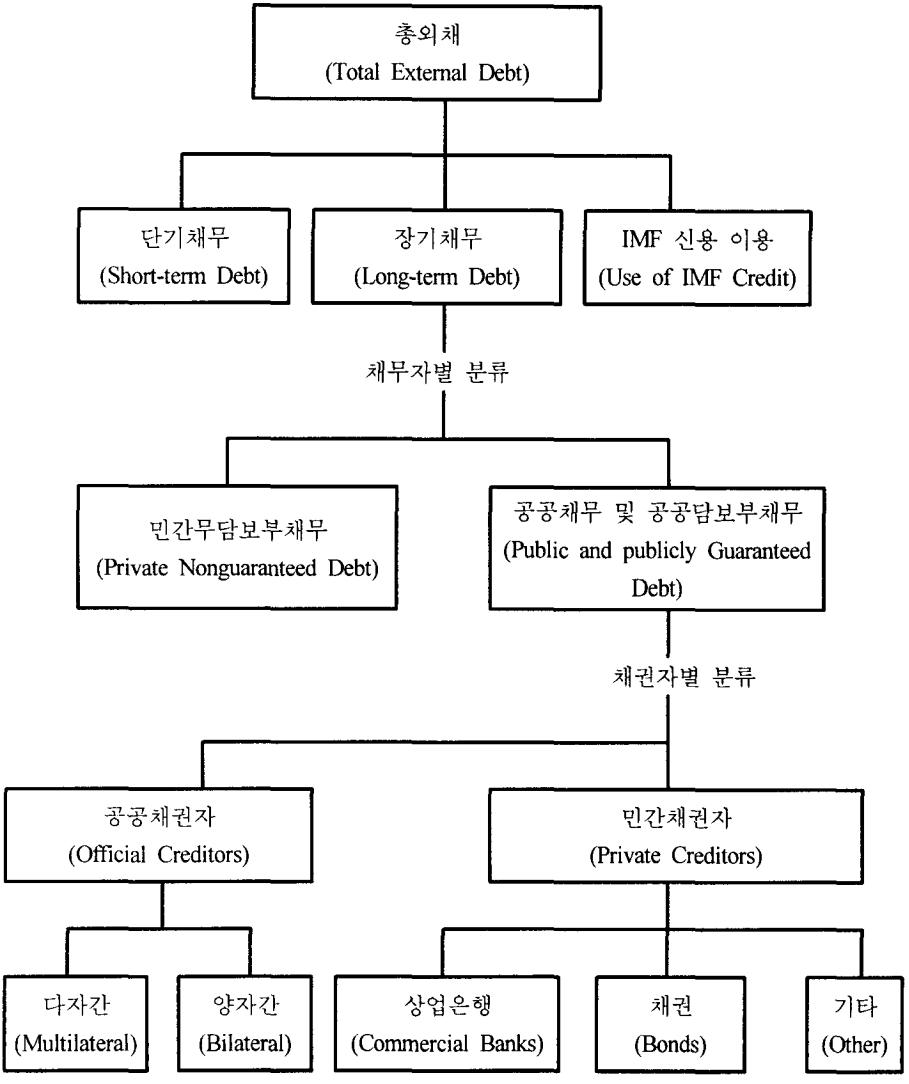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9.*

參考文獻

유길상. 1999. 「선진국의 고채무저소득국(HIPC)에 대한 新채무구제조치 (New Debt Initiative)와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장형수 · 이창재 · 박영곤. 1998.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98-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1996. 『개도국 외채 및 자본유입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1999. 『국별 모라토리엄 배경과 채무재조정』,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자료: 해연 99-1.

Anthony R. Boote and Kamau Thugge. 1999. *Debt Relief for Low-Income Countries, The HIPC Initiative.* IMF Pamphlet Series No. 51.

Axel van Trotsenburg and Alan MacArthur. 1999. *The HIPC Initiative: Delivering Debt Relief to Poor Countries.*

David G. Pearson. 1999. G7 Boost Debt Relief, Seek Stronger Financial System, Wall Street Journal. 1999. 6. 18.

G7 Finance Ministers. 1999. *Report of G7 Finance Ministers on the Köln Debt Initiative to the Köln Economic Summit, Cologne, 18-20 June, 1999.*

Oxford Analytica Brief, "International: Debt Initiatives" Apr 30. 1997.

Oxford Analytica Brief, "International: Debt Financing" Sep 25. 1997.

Oxford Analytica Brief, "International: Debt Relief" May 24. 1999.

Oxford Analytica Brief, "International: HIPC Reform" Mar 11. 1999.

Oxford Analytica Brief, "International: HIPC Expansionf" Oct 14. 1999.

IMF. 1999. *Debt Initiative for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9.*

World Bank. *Managing External Debt in Developing Countries,* p. 186

World Bank. HIPC Initiative Progress to date.
(http://www.worldbank.org/hipc/progress-to-date/progress-to-date.html)

World Bank Development Committee, September 1998. *The Initiative for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Review and Outlook.*

World Bank. 1999. HIPC Initiative Progress Through September 1999. (http://www.worldbank.org/hipc/progress-to-date/May99v3/may99v3.htm)

World Bank. 1999. *Perspective on the Current Framework and Options for Change.*

World Bank. 1999. *Prepared by the Staff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World Bank. 1999. *Modifications to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ues (HIPC) Initiative.*

Executive Summary

Köln Debt Initiative and Korea's Policy Agenda

Hyoungsoo Zang and Young-Gon Par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cently established Koeln Debt Initiative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Koeln Debt Initiative, initiated by the G-7 in June 1999, extends and deepens in many important respects the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Initiative launched by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the World Bank and IMF, in 1994. The Koeln Initiative is very likely to be a main framework for future debt relief mechanism of the Paris Club.

Under the Koeln Initiative, Korea would share the burden of debt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previous lending to the eligible poor countries. According to our estimates, the total amount of debt relief expected by Korea under the Initiative would amount to at most US$ 6 million in net present value terms. In addition to the burden, Korea has pledged to contribute US$ 20 million to the HIPC Trust Fund at the World Bank and to the special account at the IMF. Although, depending on possible change in cut-off dates for eligible debts, the amount of Koreas burden may change, it should not be too much for the worlds 12th biggest economy to pay for good reason.

The study concludes that rather than passively following or seeking to evade the international trend of alleviating debt burden of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actively approach the issue. It should actively consider participating in the Paris Club on a permanent basis.

發刊資料 目錄

■ Working Papers/資料論文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金廷洙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L. Y. Mytelka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郭承濚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朴泰鎬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phasis on the Korean Case 洪裕洙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柳莊熙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Taeho Bark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Jang-Hee Yoo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In-Soo Kang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rment in Southeast Asia Jai-Won Ryou · Byung-Nak Song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Sung-Hoon Park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Wook Chae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Chung Ki Min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Joo-Sung Jun

1990~현재까지의 발간자료목록은 연구원
Homepage(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ket: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 Yoo Soo Hong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 Jin-Soo Yoo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 Chang Jae Lee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 Je Hoon Park

94-03 Technology Transfer: The Korean Experience — Yoo Soo Hong

95-01 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sian Development Countries — Jea-Jung Kwan

96-01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ic: A Korean Perspective — Wan-Soon Kim

96-02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nd prospects — Yunjong Wang · June-Dong Kim

96-03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 Suchan Chae

96-04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 Korea's Role and Priorities in the WTO System — Chan-Hyun sohn

96-05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 — Wook Chae

96-06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 Joongi Kim · Jong bum Kim

96-07 Competition Policy and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 — Young-Soo Woo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June-dong Kim

97-02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 Jaebong Ro · Hyungdo Ahn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 王允鍾 · 李晟鳳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 Inkyo Cheong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 李晟鳳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 Jong Bum Kim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Sang-In Hwang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Seunghee Han · Inkyo Cheong

97-09 IMF 救濟金融 事例 硏究: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金元鎬外

97-10 韓 · 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李鐘華

97-11 러시아의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鄭鎔株

98-01 韓 · 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程 勳 · 李鴻培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Mikyung Yun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 · 美 投資協定의 意義 및 展望 金寬澔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June-Dong Kim · Sang-In Hwang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Chan-Hyun Sohn · Junsok Yang · Hyo-Sung Yim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Chong Wha LEE

98-07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1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英國 申東和

98-08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2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인도네시아 金完仲

98-09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3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美國 朴英鎬

98-10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4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中國 金琮根

98-11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5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泰國 權耿德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Hyungdo Ahn · Hongyul Han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金準東 外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王允鍾 外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Yoo Soo Hong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洪裕洙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 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 - 孫讚鉉 · 任曉成

98-1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 申東和

98-19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尹美京·朴英鎬

99-01 改革推進 外國事例와 示唆點 金元鎬 外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蔡 旭·徐暢培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In-Kyo Cheong·Yunjong Wang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 In-Kyo Cheong

99-05 OECD 연구시리즈[1]: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 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張槿鎬

99-06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 Yunjong Wang

99-07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Myung-Chul Cho·Hyoungsoo Zang

99-08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Hyungdo Ahn

99-0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 in Korea June-Dong Kim

99-10 OECD 연구시리즈[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姜聲鎭

99-11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Jae-Jung Kwon·Joo-Ha Nam

99-12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Sung-Yeung Kwack

99-13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Jong-Bum Kim

99-14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nl Financial Coorperation Yunjong Wang

99-15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Chong Wha LEE

99-16 OECD연구시리즈[4]: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權 栗

99-17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王允鍾·申東和·李炯根

99-18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genda Solutions for ASEM Ⅲ Simonetta Verdi

99-19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 Honggue Lee

99-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99. 11) Sung-Hoon Park

99-21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 Byung-il Choi

99-22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 — Sun G. Kim·Wankeun Oh

99-23 Ecotech and FEEEP in APEC — Ki-Kwan Yoon

99-24 OECD연구시리즈[5]: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99. 12) — 尹美京·金琮根·羅榮淑

99-25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 Inkyo Cheong

99-26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s Participation — Jae-Wan Cheong

99-27 OECD연구시리즈[6]: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 미국·네덜란드·일본·멕시코 — 梁俊晳·金鴻律

99-28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 Hyungdo Ahn et al.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 張亨壽·朴映坤

99-30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Inseok Shin·Yunjong Wang

99-31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 — Chong Wha LEE

99-3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 — Yongsok Choi

張亨壽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1984)
미국 브라운대학교 경제학박사(1993)
세계은행(IBRD)(1993~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hzang@kiep.go.kr)
著書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공저, 1998)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공저, 1998)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공저, 1999) 외

朴映坤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졸업(1995)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석사(19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ygpark@kiep.go.kr)
著書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공저, 1998)

資料論文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1999년 12월 25일 인쇄
1999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 景 台

발행처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 3460-1178, 1179 FAX : 3460-1144

인 쇄 남형문화(주) 전화 : 503-4825 대표 : 李南日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寫를 금함】

ISBN 89-322-4072-8 94320 값 5,000원
89-322-4027-2(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절취선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A	무역 투자부문 (계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B	구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C	미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D	아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5만원	12만원
E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2만 5천원	
F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G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인쇄물) / 10만원(전자메일)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 FAX : 02) 3460-1144
E-mail : sklee@kiep.go.kr

■ 회원특권

- S 기관회원에 대해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 소장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무역·투자	B 구주경제	C 미주경제	D 아주경제	E 계간지	F 월간지	G 주보	
								인쇄물	전자메일
기관회원 □ 일반회원 □ 교환기관 □ OB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